

본인확인서 (FATCA · CRS 법인/임의단체용)

본인확인	담당	책임자

▶ 본 확인서는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한 「정기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에 의하여 작성이 요구되는 필수서식입니다.

가. 고객정보

법인(단체)명		사업자번호	
구분선택(V)	국내법인(단체) ()	해외법인(단체) ()	연락처

나. 확인사항

■ 아래 ①~④질문에 순차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어설명 및 상세한 작성방법은[본인확인서(법인용)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귀 법인은 조세목적상 미국법인 또는 미국기관 등에 해당하십니까? [예] 를 선택한 경우, 뒷면 [A]-⑤항 을 작성하시고, [A]-⑤항 에 [아니오] 선택시 앞면 아래 ②항 으로 이동 [아니오] 를 선택한 경우, 아래 ②항 으로 이동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②	귀 법인은 예금기관, 수탁기관, 투자법인 또는 특정보험회사(이하 "금융회사")에 해당하십니까? [예] 를 선택한 경우, 뒷면 [B]-⑥ 으로 이동하여 작성후, 앞면 의 [라.본인확인] 작성완료 [아니오] 를 선택한 경우, 아래 ③항 으로 이동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③	귀 법인은 다음의 능동적 비금융법인(단체)중 하나에 해당하십니까? [예] 를 선택한 경우 다음 중 해당하는 ③유형에(능동적) 체크(V)하고 앞면 의 [라.본인확인] 작성후 완료 [아니오] 를 선택한 경우, 아래④항 *수동적 비금융법인(단체) 으로 이동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01. 능동적수익을 창출하는 능동적 일반법인(단체) -직전 연도 총 수입의 50%미만이 수동적수입이고, 직전 연도의 보유자산 중 50%미만이 *수동적수입의 창출을 위하여 보유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02.주권상장법인 <input type="checkbox"/> 03.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법인 <input type="checkbox"/> 04.미국령 소재법인 <input type="checkbox"/> 05.지주회사/재무센터/전속금융회사 <input type="checkbox"/> 06.정부기관/국제기구/중앙은행 <input type="checkbox"/> 07.신생비금융외국법인 <input type="checkbox"/> 08.청산 또는 조직변경 중인 비금융법인 <input type="checkbox"/> 09.비금융그룹 <input type="checkbox"/> 10.미국연방세법 제501(c)법인 <input type="checkbox"/> 11.공익적법인(단체)	
	▶ 수동적수입이란? 이자,배당, 임대료, 수동적자산 매각이익등에서 발생한 수입을 의미하며, 적극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임대료는 제외한다.	
④	②~③ 질문에 모두 [아니오] 로 답변하신 귀 법인은 수동적 비금융법인(단체) 에 해당합니다. 귀 법인에 실질적인 지배력(대표자, 25%초과지분 직·간접적 보유 포함)을 행사하는 해외 납세자가 있으십니까? [예] 를 선택한 경우, 뒷면 [B]-⑦항 (실질지배자)에 해당항목을 기재후 앞면 의 [라.본인확인]작성후 완료 [아니오] 를 선택한 경우, 앞면 의 [라.본인확인] 작성 후 완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수동적 비금융법인"이란? 직전연도 총 수입의 50%이상이 수동적수입에 해당하고, 직전 연도의 보유자산 중 50%이상이 수동적수입을 창출하거나 수동적수입의 창출을 위하여 보유되는 법인(단체)를 의미합니다.	

다. 조세목적상 거주지국 확인(해외법인(V)에 체크한 경우 작성)

보고대상국가	납세자번호(TIN)	납세자번호 미기재사유 선택(V)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할 경우에만 체크)
거주관할권		<input type="checkbox"/> 미발급국가 <input type="checkbox"/> 조세당국이 요구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미취득
관할권(소재지)주소(본점, 설립관할권)		
미기재 사유가 미취득인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인확인

- 법인(단체)는 본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기재내용에 오류 또는 허위기 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귀행에 통지하겠습니다.
- 법인(단체)는 상황변경이 있는 경우 본 확인서 작성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에 대한 본 확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 법인(단체)는 보고대상 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본 서식에 요청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 에 의해 법인(단체)정보 및 계좌(계약)관련 정보가 국세청에 보고되고 거주관할권 등에 제공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되고 이해하였습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인 /서명)



